

안양시 평생학습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1995. 6. 12.	조례	제1372호
개정	1995. 12. 28.	조례	제1406호
전면개정	1996. 7. 18.	조례	제1496호
개정	1997. 1. 1.	조례	제1533호
개정	1998. 3. 6.	조례	제1570호
개정	1998. 9. 15.	조례	제1583호
개정	1999. 9. 8.	조례	제1654호
개정	2001. 7. 24.	조례	제1742호
개정	2003. 1. 10.	조례	제1805호
개정	2003. 6. 10.	조례	제1819호
전면개정	2004. 1. 8.	조례	제1854호
일부개정	2005. 5. 10.	조례	제1929호
일부개정	2006. 2. 24.	조례	제1988호
일부개정	2007. 9. 20.	조례	제2060호
일부개정	2009. 8. 3.	조례	제2202호
일부개정	2010. 1. 8.	조례	제2240호
일부개정	2010. 12. 31.	조례	제2297호
전부개정	2012. 10. 12.	조례	제2421호
일부개정	2013. 9. 30.	조례	제2498호
일부개정	2014. 4. 30.	조례	제2539호(제명개정)
일부개정	2014. 11. 14.	조례	제2574호(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제명개정)
일부개정	2014. 11. 14.	조례	제2579호
일부개정	2016. 1. 6.	조례	제2700호
일부개정	2017. 3. 6.	조례	제2802호(안양시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17. 5. 18.	조례	제2819호(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2018. 1. 5.	조례	제2918호
일부개정	2019. 5. 10.	조례	제3074호
일부개정	2019. 11. 15.	조례	제3145호(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	2019. 11. 15.	조례	제3153호
일부개정	2020. 4. 1.	조례	제3191호
일부개정	2022. 12. 30.	조례	제3469호(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제명개정)
일부개정	2023. 5. 22.	조례	제3502호(만 나이 통일을 위한 안양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평생교육 진흥, 평생학습원 시설물의 유지관리, 도서 및 여러 가지 자료의 수집·보존과 도서관 부대시설을 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안양시평생학습원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1. 14., 2019. 5. 10., 2022. 12. 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용료 및 수강료”란 시설사용, 교육수강, 도서관에 비치된 자료 복사 및

부대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2.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란 도서관이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한 도서 및 비 도서를 말한다.

제3조(시설의 종류) 안양시 평생학습원(이하 “학습원”이라 한다)에 만안평생학습센터, 동안평생학습센터, 만안노인복지회관, 동안노인복지회관, 석수도서관, 만안도서관, 삼덕도서관, 박달도서관, 평촌도서관, 관양도서관, 비산도서관, 호계도서관, 어린이도서관, 별말도서관의 시설을 둔다. <개정 2014. 4. 30., 2014. 11. 14., 2017. 5. 18., 2019. 5. 10., 2022. 12. 30.>

제4조(업무) ① 안양시평생학습원장(이하 “학습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맡아 처리한다. <개정 2014. 11. 14., 2018. 1. 5., 2019. 5. 10., 2022. 12. 30.>

1. 평생학습센터: 시민의 능력계발을 위한 교육, 작품발표 및 전시
2. 노인복지회관: 노인 정서함양과 여가활동 참여를 위한 교육 운영 및 편의 시설 제공
3. 시립도서관: 자료의 구입 및 수집정리, 자료의 보관·열람 및 대출, 시설의 유지관리
4. 학습원 내 시설물, 동안청소년수련관, 보훈회관의 시설물 보수·정비

②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사업 외에 시민의 능력계발 및 평생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학습원 내 시설을 이용하여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4., 2022. 12. 30.>

제5조(변상) 시설이용자가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2장 평생학습센터 <개정 2022. 12. 30.>

제6조(교육 및 강사위촉) ① 시장은 시민을 위한 기능, 취미, 교양교육 등을 포함한 평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외부전문가를 강사로 위촉할 수 있다.

② 강사의 임기 및 모집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위촉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강사 해촉)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위촉된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9. 5. 10.>

1. 삭제 <2014. 11. 14.>
2. 강사로서 지녀야 할 품위를 손상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강의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경우
4. 그 밖에 교육과 관련하여 물의를 일으킨 경우

[제목개정 2019. 5. 10.]

제8조(이용자 범위) 이용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1. 14., 2019. 5. 10., 2022. 12. 30.>

1. 평생학습센터: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시민과 관내 직장인을 우선하고 추가 모집할 경우 다른 지역 주민까지 포함
2. 노인복지회관: 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시민

제9조(이용제한 및 사용허가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4., 2019. 5. 10.>

1.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거나 이용자에게 방해가 될 물품을 지닌 사람
2. 단체행동을 선동한 사람
3. 음주를 하였거나 소란행위를 한 사람
4. 그 밖에 이용제한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0조(사용료 등 징수) ① 시장은 평생학습과 관련된 행사·회의를 위해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평생학습센터의 프로그램 운영 등 본래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9. 5. 10., 2022. 12. 30.>

② 시설사용료(이·미용료, 식대 등을 포함한다) 및 수강료는 별표 1에 따라 사전에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8. 1. 5.>

제11조(사용료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 5. 1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2. 시의 위탁사무를 처리하는 위탁기관이 주최하는 행사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12조(수강료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 3. 6., 2019. 5. 10., 2020. 4. 1., 2023. 5. 22.>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유족 포함)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세대주와 세대원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5. 결혼이민자
6. 18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
7. 「안양시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모 등 부양자

제13조(운영의 위탁) 시장은 평생교육사업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평생교육과 관련이 있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15.>

제3장 도서관

제14조(기능) 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은 정보·문화·교육센터로서 수행하여야 할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시민에게 이용 제공
2. 시민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열람·대출
3.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4. 그 밖에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15조 삭제 <2013. 9. 30.>

제16조(자료의 이용) 도서의 대출 및 열람은 무료로 한다.

[전문개정 2019. 5. 10.]

제16조의2(자료의 복제 및 전자정보의 인쇄) ① 시장은 도서관 이용자가 자료의 복제 및 전자정보의 인쇄를 원하는 경우에는 복제 및 인쇄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이용자의 부담으로 하며, 그 기준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③ 복제 및 인쇄 시설·장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민간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5. 10.]

제17조(자료의 변상책임) ① 도서관 이용자가 도서 및 자료를 잃어버렸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같은 자료로 변상해야 하고, 같은 자료로 변상할 수 없을 때에는 시중가격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 5. 10.>

제18조(이용제한) 시장은 도서관의 안전과 질서를 방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의 이용 또는 출입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 5. 10.>

제19조(위원회 구성) ①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안양시 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습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4. 11. 14., 2022. 12. 30.>

③ 위원은 만안구도서관장, 동안구도서관장과 문화계·교육계의 전문가 및 이용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위촉위원의 경우 어느 한쪽 성(性)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2. 12. 30.>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 5. 10.>

제20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9. 5. 10.>

1. 시립도서관 운영 및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2. 도서·자료의 수집, 열람 및 대출 등 시민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
3.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다른 도서관 및 문화시설과의 자료교환 등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서관 관리 및 후원에 관한 사항

제2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2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열람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23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관외대출)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자료를 관외로 대출할 수 있다.

제25조(위탁자료) ① 공중의 열람과 이용을 목적으로 도서관의 자료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람은 위탁자료 품목을 작성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자료는 도서관자료와 동일하게 취급하며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이를 돌려줄 수 있다. <개정 2019. 5. 10.>

제26조(기증도서 관리) 도서관에 기증된 도서는 기증 도서부에 올린 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27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①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자료를 상호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가치가 없게 되거나 오손된 자료를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② 도서관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연간 해당 도서관 전체장서의 100분의 7 이내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로 잃어버렸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이상으로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개정 2016. 1. 6., 2019. 5. 10.>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2. 10. 12. 조례 제2421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중 “여성회관”을 “평생교육센터”로 한다.

별표 2의 명칭란 중 “만안여성회관”을 “만안평생교육센터”로 하고 “동안여성회관”을 “동안평생교육센터”로 한다.

부칙 <2013. 9. 30. 조례 제24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4. 30. 조례 제25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1. 14. 조례 제2574호,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안양시 평생학습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목중 “평생학습원”을 “평생교육원”으로 하고, 제1조 중 “평생학습원”을 “평생교육원”으로 하고, 제3조 중 “학습원”을 “교육원”으로 하며, 제4조제1항 중 “학습원장”을 “교육원장”으로 하고, 같은조 제1항제4호 중 “학습원”을 “교육원”으로 하고, 같은조 제2항 중 “학습원”을 “교육원”으로 하며, 제19조제2항 중 “학습원장”을 “교육원장”으로 한다.

⑧ 부터 ⑮ 까지 생략

부칙 <2014. 11. 14. 조례 제25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 6. 조례 제27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3. 6. 조례 제2802호, 안양시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안양시 평생교육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안양시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모 등 부양자

④ 생략

부칙 <2017. 5. 18. 조례 제2819호,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⑰ 까지 생략

⑱ 「안양시 평생교육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만안도서관”을 “만안도서관, 삼덕도서관”으로 하고, “평촌도서관”을
“평촌도서관, 관양도서관”으로 한다.

부칙 <2018. 1. 5. 조례 제29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5. 10. 조례 제30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1. 15. 조례 제3145호,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④5 까지 생략

④6 「안양시 평생교육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안양시 사무의 민
간위탁 조례”로 한다.

④7 부터 ④9 까지 생략

부칙 <2019. 11. 15. 조례 제315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평생교육센터 사용료에 대한 적용례) 별표 1 제1호 중 기술교육·취미교
육의 기준 및 사용료 등 개정규정은 2020년 1분기 수강생부터 적용한다.

제3조(노인복지회관 사용료에 대한 적용례) 별표 1 제2호 중 이·미용료 및 목
욕탕의 사용료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사용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0. 4. 1. 조례 제31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2. 30. 조례 제3469호,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안양시 평생교육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목 중 “평생교육원”을 “평생학습원”으로 하고, 제1조 중 “평생교육원”을 “평생학습원”으로 하며, “안양시평생교육원”을 “안양시평생학습원”으로 한다.

제3조 중 “평생교육원”을 “평생학습원”으로 하고, “교육원”을 “학습원”으로 하며, “만안평생교육센터, 동안평생교육센터”를 “만안평생학습센터, 동안평생학습센터”로 한다.

제4조제1항의 “안양시평생교육원장”을 “안양시평생학습원장”으로 하고, “교육원장”을 “학습원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평생교육센터”를 “평생학습센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의 “교육원”을 “학습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원”을 “학습원”으로 한다.

제2장 제목 “평생교육센터”를 “평생학습센터”로 하고, 제8조제1호 중 “평생교육센터”를 “평생학습센터”로 하며, 제10조제1항 중 “평생교육센터”를 “평생학습센터”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교육원장”을 “학습원장”으로 한다.

제19조제3항 중 “석수도서관장, 평촌도서관장”을 “만안구도서관장, 동안구도서관장”으로 한다.

별표 1 중 “평생교육센터”를 “평생학습센터”로 한다.

⑫ 생략

부칙 <2023. 5. 22. 조례 제3502호, 만 나이 통일을 위한 안양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22. 12. 30.>

시설사용료 및 수강료(제10조제2항 관련)

1. 평생학습센터

구분	기준	사용료 등		비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일반	
기술교육 취미교육	과목당 1주 수강시간 · 4시간 미만 · 4시간이상~6시간 미만 · 6시간 이상	무료	월 15,000원 월 20,000원 월 25,000원	
강 당 소 강 당 다목적실	1회 / 2시간 (기준시간)	무료 무료 무료	< 기본시설 > -평 일 50,000원 -토요일·공휴일 60,000원 < 부대시설 > -냉난방비 20,000원	○ 기준시간 초과사용 시 사용료 가산 - 기본시설 : 초과 1시간당 25,000원 가산 * 토요일·공휴일은 30,000원 가산 - 부대시설: 초과 1시간당 기준 사용료의 20% 가산 ○ 부가가치세 별도
전 시설	1회 / 1일	무료	20,000원	○ 부가가치세 별도
식 당	1회 / 2시간	무료	20,000원	○ 기준초과 사용 시 초과사용 비율에 따라 추가징수 ○ 부가가치세 별도

2. 노인복지회관

구분	기준	사용료 등		비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일반	
이·미용료	커트 퍼머	무료	2,000원	
		무료	5,000원	
경로식당 (중식비)	1식	무료	1,000원	
목욕탕	1회	무료	1,000원	
강 당	1회/2시간	무료	20,000원	○ 기준시간 초과사용 시 초과사용 비율에 따라 추가징수 ○ 부가가치세 별도
취미교육	1명/1개월	무료	무료	

※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말함.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이란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함.

[별표 2] <개정 2019. 5. 10.>

도서자료 복사사용료

구 분	규격	기준	금액(원)	비고
전자복사기 (자료복사료)	B5	1매	30	
	A4	1매	40	
	B4	1매	50	
컴퓨터프린터기 (인쇄료)	A4	1매	50	